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위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제위원"이란 시험의 출제·검토를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출제위원장단"이란 출제위원장·출제부위원장·검토위원장·검토부위원장·영역별 위원장을 말한다.

제3조(출제위원의 자격) ① 출제위원은 시험과 교육과정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해당 연도 시험 응시 예정 자녀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 법 제34조 제13항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사람
3. 직전 3년간 연속으로 시험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직전 3회 연속으로 시험 및 모의시험에 참여한 사람(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고 한다) 재직자는 예외로 한다.)

② 그 밖에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은 평가원장이 정한다.

제4조(출제인력풀 구축) ① 평가원은 출제위원을 지정·위촉하기 위해 시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영역·전공, 출신대학, 소속기관, 신분, 출제 경험 등을 포함한 출제인력풀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평가원은 출제인력풀의 질 관리를 위해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

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출제위원의 지정·위촉) ① 출제위원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등 출제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평가원에 선정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교육 분야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평가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평가원장이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시험의 출제위원 등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때부터 해당 연도의 시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출제위원은 평가원이 제4조에 따른 출제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천한 후보자 중 선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출제위원장단과 출제위원 중 평가원 재직자는 시험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 선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원장이 지정하여 위촉한다.

⑥ 그 밖에 선정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출제를 위해 필요한 자의 위촉 절차는 평가원장이 정한다.